

「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6월 12일, 평창군수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6월 20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29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
심사특별위원회(2017년 6월 20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재무과장 이정의)

가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
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2017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은,
토지취득 당초 2필지 3,131㎡, 600,000천원에서 변경 1필지 2,440㎡
548,185천원임.

토지취득 : 1필지 2,440㎡ 548,185천원

- ①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위치 변경(농축산과)
 - 당초 : 용평면 장평리 285-1외 1필지 3,131㎡ 600,000천원
 - 변경 : 용평면 장평리 274-2 2,440㎡ 548,185천원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오정희)

□ 검토결과 주요내용

○ 「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」 은

- 토지취득 변경내용으로

당초 승인된 거점 소독시설 설치사업의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내용상으로는 691㎡, 51,815천원이 감소되어 변경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 9건으로 39,905㎡, 4,766,487천원이 되겠음.

□ 사업내용을 보면

○ 『거점 소독시설 설치사업』 을 추진하여

- 구제역, AI 등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방역으로 초기단계부터 신속히 조치하여 질병확산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
- 특히 본 사업은 지난 제224회 정례회의(2016.12.20)에서 용평면 장평리 285-1번지의 1필지 3,131㎡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,
- 승인 이후, 국도31호선 선형개량 사업 추진으로 변화된 도로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사업장 변경 요구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획은 걱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점용허가 관련 사전 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,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시급성이 인정되었음.
- 또한, 시설물 준공이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6. 소수 의견 요지 : 없음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1부.

2017년 취득·처분대상 재산목록(2차)

(단위 : m², 천원)

| 일련 번호 | 재 산 표 시 | | | 예 정 가 격 | 취 득 시 기 | 취 득 사 유 | 비 고 (소유자)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지 목 | 소 재 지 | 수 량 | | | | |
| 토지취득 (1건, 1필지) | | | 2,440 | 548,185 | | | |
| 소계(1건 1필지) | | | 2,440 | 548,185 | | | |
| 1 | 전 | 용평면 장평리 274-2 | 2,440 | 548,185 | 2017 상반기 | 거점소독시설 설치 | 김낙현 |